

	규정	문서번호	TWP-A402
		제정일자	1998. 03. 01.
	교수연구 및 논문집 발간 규정	개정일자	2012. 08. 24.
		개정번호	3

목 차

- 제1장 총칙
- 제2장 교수 연구물의 기준
- 제3장 심사와 기준
- 제4장 교수 연구 논문집 발간
- 제5장 교수연수활동

부 칙

별 표

작성부서	교무학생처	제정일자	1998. 03. 01.
------	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			승 인
직 책	담 당		교무학생처장	산학입학처장	기획예산처장	사무처장	총 장
서 명							
일 자							



규정

교수연구 및 논문집 발간 규정

문서번호	TWP-A402		
제정일자	1998. 03. 01.		
개정일자	2012. 08. 24.		
내정번호	3	페이지	2/7

	규정	문서번호	TWP-A402
		제정일자	1998. 03. 01.
	교수연구 및 논문집 발간 규정	개정일자	2012. 08. 24.
		개정번호	3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라 한다) 교수의 학술 및 기술연구 장려와 그 결과에 대해 심사하고 교수의 연구 논문집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2.7.27>

제2조(발표 자격) 이 대학교의 교수 연구 논문집에 발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범위는 다음과 같다.<개정 2012.7.27>

1. 이 대학교의 전임교원 및 전임교원과 공동 연구자<개정 2012.7.27>
2. 이 대학교의 외래교수로서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<개정 2012.7.27>
3. 기타 이 대학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논문 발표 대상자<개정 2012.7.27>

제3조(연구물의 제출과 기간) ① 이 대학교의 신규임용 전임교원 중 부족논문 100%는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2.7.27>

② 전임교원은 현 직급 임용기간 중 100%이상의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당해연도 계재논문은 연구실적물 심사보고서를 포함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소정의 심사를 마친 교수 연구 실적물에 대하여는 법정기일내에 교육부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조(예외 인정) 전문대학 교원인사관리지침에 의한 (별표:1)의 경력자를 신규 임용하였을 경우에는 연구실적물을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.

제2장 교수 연구물의 기준

제5조(연구물의 범위) ① 연구 논문은 교수의 전공분야 또는 학사에 관한 것으로써 논문에 필요한 형식조건과 그 체계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.

②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100매 이상이어야 한다. 다만, 자연과학 분야는 예외로 한다.

③ 연구논문 내지 그 실적물은 다음과 같이 발표된 것은 인정하되 일간지 및 교내신문에 발표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
1. 출판된 저서
2. 학회지

	규정	문서번호	TWP-A402
	교수연구 및 논문집 발간 규정	제정일자	1998. 03. 01.
		개정일자	2012. 08. 24.
		개정번호	3
		페이지	4/7

3. 타 기관 연구논문집의 수록 논문
4. 학술적인 전문기관 정기 간행물
5. 예능계의 경우에는 연구, 발표, 전시, 입선 등의 작품
6. 석 · 박사 학위취득 논문 등

제6조(연구실적물의 인정) 연구실적물의 심사에 필요한 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강의용 미 출판 저서와 중 · 고등학교 교과서 및 참고서 등은 연구실적물에서 제외한다. 다만, 교육부 검인정 교과서 및 저자의 독창적인 이론과 연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은 인정할 수 있다.
2. 예 · 체능계 분야는 총장이 인정하는 실적조서로 대체할 수 있다. 다만 이러한 경우에 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서 등 (별표:2)와 같이 객관성 있는 증빙자료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.

제3장 심사와 기준

제7조(심사위원회의 구성) ① 교수논문 및 연구물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교수연구(물)심사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함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전공분야별 위원 3인으로 총장이 임명하되, 이중 1인은 타 대학의 교수 또는 산업체 관련 전문인으로 위촉한다.
- ③ 위원회의 간사는 교수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일반직원으로 한다.

제8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의 심사 의결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교수연구물의 심사 및 평정
2. 심사 대상 연구물의 공개 토론 및 의견 개진
3. 타 대학 전공 교수 및 산업체 관련 전문인 위촉 추천
4. 외부 전문기관에의 자문
5. 교수 연구 논문집의 편집, 발간
6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9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2/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꾸심사자를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질의 등 연구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	규정 교수연구 및 논문집 발간 규정	문서번호	TWP-A402
		제정일자	1998. 03. 01.
		개정일자	2012. 08. 24.
		개정번호	3
		페이지	5/7

제10조(심사평정) 교수연구논문의 심사 평정은 수, 우, 미, 양, 가의 5단계로 하며, 심사위원 전원 ‘우’ 이상의 평정 연구물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. 다만, 예·체능계분야의 평정대상은 (별표:2)에 의하되, 1년에 1점으로 국한한다.

1. 법정 의무 교수연구물의 인정
2. 이 대학교의 ‘교수연구논총’(집)에의 게재

제11조(연구실적물의 인정 환산율) 제출된 교수연구실적물의 인정 환산율은 다음과 같다.

1. 1인 연구 또는 편찬 : 100%
2. 2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: 70%
3. 3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; 50%
4. 4인 이상 공동 연구 또는 편찬 : 30%
5. 석사학위 취득 논문 : 100%
6. 박사학위 취득 논문 : 200%

제 4 장 교수 연구 논문집 발간

제12조(게재의 대상) 이 대학교의 교수연구논문집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은 위원회의 심사에서 ‘우’ 이상의 평정을 받은 논문에 한한다. 다만 외부에 발표가 되었거나 보고 제출된 경우의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<개정 2012.7.27>

제13조(편집 및 발간) 교수연구논문집의 발간에 필요한 편집과 발간에 관한 다음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한다.

1. 논문집 발간 방침 및 계획 수립
2. 논문집 게재 대상 채택
3. 편집 목차의 결정
4. 발행 부수 및 배부처
5. 기타 논문집 발간에 필요한 사항

제14조(소요예산) 교수연구를 심사 및 논문집 발간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따로 정한다.

제5장 교수연수활동

	규정	문서번호	TWP-A402
		제정일자	1998. 03. 01.
	교수연구 및 논문집 발간 규정	개정일자	2012. 08. 24.
		개정번호	3

제15조(연수의무) ① 이 대학교의 교수 자질 향상과 산학연계를 위하여 현직급 임용기간 중 1주일 이상의 전공과 관련되는 산업체 현장 연수함을 원칙으로 한다.<개정 2012.7.27>
 ② 제1항에 의하여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6조(연수대상 기관) 교수가 연수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며 자체 연수와 박사학위 과정은 제외한다.

1. 산학협동 및 자매결연 유관업체
2. 학생 현장실습 업체
3.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이상의 업체
4. 교육부, 관련 학회 및 각종 협회의 주관, 후원기관의 연수
5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업체

제17조(결과보고와 처리) ① 연수 및 동 교육훈련에 참여한 교수는 교학처를 경유,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인사 담당 부서에서는 관련 교수의 인사기록카드에 그 내용을 추가로 기재, 정리하여야 한다.

제18조(보칙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	규정 교수연구 및 논문집 발간 규정	문서번호	TWP-A402
		제정일자	1998. 03. 01.
		개정일자	2012. 08. 24.
		개정번호	3
		페이지	7/7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개정2012.8.24>

연구실적물의 예외 인정

경력사항	임용직급	연구실적물 인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한국해양대학, 수산대학 졸업자로 3급 항해사 (상선 및 어선항해사 포함), 3급 기관사 이상 또는 1급 선박통신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상선의 원양구역 승무경력 또는 200톤 이상의 어선의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(이 경우 승선 후 휴가기간이 휴가 전에 소속되었던 기관(회사)과 동일한 경우 휴가기간을 승선기간으로 본다)· 공과계대학(공업교육대학, 공업교육학과 포함) 졸업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산업체에서 그 전공분야와 동일한 직무에 임용일 기준, 계속하여 3년 이상 근무한 자	조교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조교수는 최근 3년 이내의 논문 1편(100%) 이상· 단,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제외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한국과학기술원 박사과정 이수중인 자로서 동 과정의 1년 이상을 이수하고 그 성적평점이 2/3이상이며 한국과학기술원장이 추천하는 자	조교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한국과학기술원장의 평점 및 추천을 연구실적 1편(100%)으로 인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대학(전문대학)에서 총장, 부총장, 총장으로 재직하였던 자를 신규 임용하는 경우· 대학(전문대학)에서 교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하였던 자를 2년 이내 신규 임용하는 경우	조교수 이상교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과거에 발표한 연구실적물을 인정하여 임용가능

[별표 2]

예 · 체능계 및 창작실기계 연구업적 평가표